全等社会公司

제382회 임시회 2020. 6. 9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20년 5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법 개정(자활기관 명칭 변경)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제1항)
 - "중앙자활센터" → "한국자활복지개발원"
- O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등 관련법 내용에 맞춰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, 자구를 올바르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제2항, 제8조제3항, 제8조제5항, 제8조제5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2항은 법제처의 "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" 등을 참고하여 각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한 것임.

조 항	현 행	개 정 안
제3조	■(이하 <u>" 영 "</u> 이라 한다)	■(이하 <u>"영"</u> 이라 한다)
제5조	■(이하 <u>" 법 "</u> 이라 한다)	■(이하 <u>"법"</u> 이라 한다)
제7조	■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	■변경할 때에는
제8조제2항	■단,	■다만
제8조제3항	■ <u>상환하여야 하고</u> , 전세점포 임대자금은— <u>최대 최장 6년까지</u> 연장해 줄 수 있다.	■ <u>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</u> 전세 점포 임대자금은 <u>최대 6년</u> <u>까지 연장할 수 있다.</u>
제8조제5항	■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2</u> <u>항에도 불구하고 그</u> 대여받은 자금을	■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 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<u>대여기간 내에도</u> 대여 받은 자금을
제8조제5항3	■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 외의	■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
제10조제1항	■ <u>보험료</u> 지원할 수 있다.	■ <u>보험료를</u> 지원할 수 있다.
제11조제2항	■기금운용상	■기금 운용상

○ 안 제8조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 결정 시 타당성 검토 의뢰 기관의 명칭을 "중앙자활센터"에서 "한국자활복지개발원"으로 변경하는 것으로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개정에 따라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임.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제15조의2(한국자활복지개발원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<u>한국자활복지개발원</u>(이하 "자활복지개발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○ 안 제1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던 것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|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한 것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법률에 따라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</u>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기관명칭 등을 수정하고, 자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절차상으로도 조 례안 예고 등 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조 례안 개정에 문제 없음.